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14 선고 2022가단5748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○○○

판 결 선 고

2023. 2. 14

주 문

1. □□□과 피고 ○○○ 사이에 별지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. 1. 28.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○○○는 □□□에게 별지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, 피고 ☆☆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.
3. 피고 ☆☆ 주식회사는 별지2목록 기재 주식 중 338,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□□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 반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○○○